

#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8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5. 8. 25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정이유

-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### ○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2조)
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규정

### ○ 예산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(안 제3조)
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 규정

### ○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
##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 7. 21. ~ 8. 10.(20일간)

## 제정 조례안 : 불임1

## 관계법령 발췌서 : 불임2

## 예산수반사항 : 불임3

## 기타 참고사항 : 불임4

-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

## 붙임 1

###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,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예산지원 대상 사업) 시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
2.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
3.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사업
4.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
5. 노사실무자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
6.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
7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4조(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)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지역 조직
2. 지역·업종·직종별 단위노동조합
3.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·보건 관련 단체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        | 산업정책과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| 산업정책과장<br>김동완    |
|             | 담당팀장<br>직위·성명 | 노동정책계장<br>최훈봉    |
|             | 담당자<br>성명·전화  | 권용철<br>(행정 2283) |

# **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**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682 |
|------------|------|

제안년월일 : 2015년 9월 15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**□ 제안이유**

- 조문을 간단한 표현으로 정리하고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 중 지역·업종·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삭제하기로 함

## **□ 주요내용**

- 안3조의 조문의 문구 정리와 안 제4조(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) 제2호의 지역·업종·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은 삭제함

## **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‘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’을 ‘사업비를’로 수정하며,  
안 제4조 중 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 중 ‘3’을 ‘2’로 수정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제정안   | 수정안   |
|---|---|
| <p>제3조(예산지원 대상 사업) 시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<u>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)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지역 조직</li><li>2. 지역·업종·직종별 단위노동조합</li><li>3.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·보건 관련 단체</li></ol> | <p>제3조(예산지원 대상 사업) 시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<u>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4조(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)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지역 조직</li><li>2. <u>삭제</u></li><li>2.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·보건 관련 단체</li></ol> |